

□ 변경 대비표

효력발생일 : 2023년 06월 22일

신한퇴직연금명품펀드셀렉션40증권투자자산탁[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3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 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1) 신한퇴직연금명품펀드셀렉션40증권투자자산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이 투자자산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자산탁 * 신한퇴직연금증권모투자자산탁[주식-재간접형], * 신한퇴직연금자산배분증권모투자자산탁[채권-재간접형] 책임운용역 : 김성훈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1) 신한퇴직연금명품펀드셀렉션40증권투자자산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이 투자자산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자산탁 * 신한퇴직연금증권모투자자산탁[주식-재간접형], * 신한퇴직연금자산배분증권모투자자산탁[채권-재간접형] 책임운용역 : 김성훈 부책임용역역 : 신희재 -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23년 05월 31일)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상기 '가' 변경내용 업데이트 |
|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자산탁 주요 투자 대상] <주석 신설>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자산탁 주요 투자 대상] 주석: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의 목적 |
|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신설>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증권대차 거래 위험 |
|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3부 1. 재무정보 | 제3부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주석 신설> | 제3부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주석: - 증권대차 거래에 따른 수수료수익 또는 비용 - 주식의 매매회전율 등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 거래비용 |
| 3.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자산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산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자산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산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 | | |
|--|--|--|
| <p>3.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계속></p> | <p>-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 적용</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p> <p>B. 과세 이연: (기재생략)</p> <p>C.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p> | <p>- <삭제></p> <p>- <삭제></p> <p>B. 과세 이연: (현행과 동일)</p> <p>C.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p> <p><삭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p> <p>※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p>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업데이트: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최근현황갱신</p> |
| <p>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업데이트: 제3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 <p>제3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p> | <p>제3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23년 05월 31일)</p> |
| <p>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p> |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최근현황갱신 라. 운용자산 규모 -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23년 05월 31일)</p>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2.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 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p>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및 운용규모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p> | <p>운용전문인력 (1) 신한퇴직연금명품펀드셀렉션40증권투자자산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이 투자자산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자산탁 * 신한퇴직연금증권모투자자산탁[주식-재간접형], * 신한퇴직연금자산배분증권모투자자산탁[채권-재간접형] 책임운용역 : 김성훈</p> | <p>운용전문인력 (1) 신한퇴직연금명품펀드셀렉션40증권투자자산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이 투자자산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자산탁 * 신한퇴직연금증권모투자자산탁[주식-재간접형], * 신한퇴직연금자산배분증권모투자자산탁[채권-재간접형] 책임운용역 : 김성훈 부책임용역 : 신희재 -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23년 05월 31일)</p> |
| <p>2.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수익률)</p> | <p>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p> | <p>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3년 05월 31일)</p> |